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선설비 준공검사에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 등〉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94호)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무선설비 준공검사에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	3
2. 전파차단장치 사용범위 확대 및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인가 면제 등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형두의원 등 24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1. 12.

다. 회부연월일 : 2024.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이하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라 함)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증가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신속한 최첨단 ICT 서비스 도입·확산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확인하고 그 결과(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며, 사업자가 자기적합확인서를 부정하게 작성·제출하면 행정처분 등을 받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한편,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또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국가기관 등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불법드론·폭발물 등)을 대상으로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해외에서 사용되어 국내에서 전파혼신을 유발하지 않음에도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조인가를 받아야 제조가 가능해 수출 기업은 불필요한 인가를 받아야 함. 또한,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사실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등에게 인가한 전파차단장치의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가기관 등이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불법드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인가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장비정비 계획을 사전 신고하면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1조의2).

Ⅲ. 검토의견

1. 무선설비 준공검사에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스스로 확인(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이라 함)하고, 그 결과(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라 함)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수수료 부과 대상에 준공검사를 갈음하는 자를 포함하고(안 제69조),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에 무선국자기적합확인 관련 업무를 포함하며(안 제78조),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안 제72조 및 제90조)을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 (생략)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④ (생략) 제24조(검사)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2. ----- 제24조제4항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제6항 ----- -----

현행	개정안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 -----. ----- -----.
④·⑤ (생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제2항·제5항·제6항 ----- ----- -----.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생략)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	② ----- 제24조제5항----- ----- ----- -----

현행	개정안
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 ----- -----.
제66조의3(진홍원의 운영경비 등)	제66조의3(진홍원의 운영경비 등)
① 진홍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① ----- ----- ---
1. 삭제	2. (현행과 같음)
2. (생략)	<u>2의2. 제6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수수료</u>
<신설>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9조(수수료)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u>3의2.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u>
	<u>검사를 갈음하는 자</u>
4. 삭제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① (생략)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6. ~ 20. (생략) ③ ~ ⑤ (생략)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4의4. 제24조제4항 ----- ----- ----- ----- ----- ----- ----- ----- 5. 제24조제5항 및 제6항----- ----- ----- ----- -- 6. ~ 2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24조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 ----- ----- -----.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측정·조사·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 제24조제5항 및 제6항----- ----- ----- ----- ----- ----- ----- -----

현행	개정안
1의2.·2. 삭제 3. ~ 6. (생략)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u><신설></u> 2의2. (생략)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 검토사항

- 현행법 제24조제1항에¹⁾ 따르면 무선국의 개설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나 개설신고·변경신고를 한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함)를 받도록 규정함.

1) 「전파법」 제24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준공검사란 전파 혼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이동통신 무선국을 준공하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무선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함.
- KCA는 준공된 이동통신 무선국 중 일부(10%)를 대상으로 기술기준(전파강도 등) 및 운용요건(설치장소 등)을 최초로 검사하며, 이후 전체 무선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함.
-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는 현장검사와 서류검사로 나뉘어지는데 최근 5년간 준공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약 15만국을 실시하였음.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 현황(최근 5년)>

(단위: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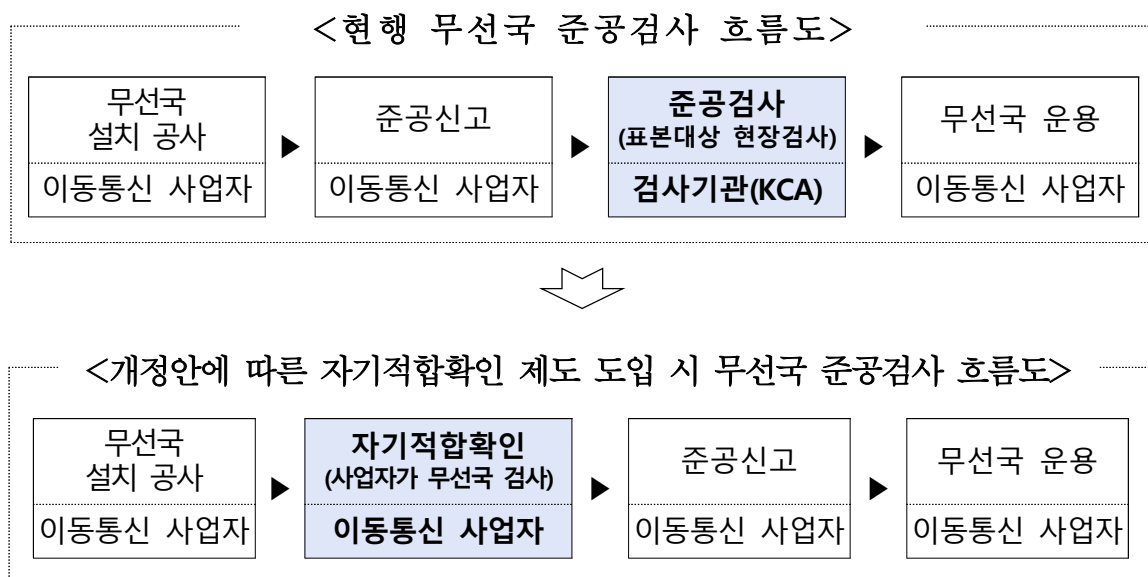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평균
현장검사	19,997	19,862	13,864	14,833	15,945	16,900
서류검사	140,607	170,156	119,173	125,212	138,290	138,688
합계	160,604	190,018	133,037	140,045	154,235	155,58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고로 이동통신 무선국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4·5G 등)을 위해 전파를 송·수신하는 설비로 2024년 9월 기준 이동통신 사업자용 무선국 수는 총 171만 8,330국임.
- 개정안은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준공검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최첨단

ICT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확산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 사업자가 무선국을 준공한 후 동 무선국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직접 확인하는 자기적합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준공검사에 갈음하려는 취지임.

- 검사기관인 KCA가 검사대상 표본추출, 일정협의, 현장검사, 사후조치 및 비표본무선국 처리 등의 준공검사를 수행하는데 최대 45일이 소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통해 무선국 개설절차의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 시 준공검사 흐름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제24조제2항에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을 약칭하였는데 이후 법률에서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음. 약칭이란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법률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임²⁾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약칭규정의 실익은 낮아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국 개설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적합확인의 결과가 제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도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2) 「법제기준과 실체」, 국회사무처, 2024.5. p231.

2. 전파차단장치 사용범위 확대 및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인가 면제 등

- 현행법 제29조제3항 각 호에³⁾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를 위한 교육, 훈련, 장비정비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자는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및 제5항).
-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하는 경우 신고 의무기관을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확대함(안 제29조제6항).
-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29조제7항).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를 위한 교육, 훈련, 장비정비 또</u>

3)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협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현행	개정안
<신 설>	는 시험을 목적으로 전파차단 장치를 사용하려는 자는 전파 차단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u>중앙행정기관의</u> 장은 그 제 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계획이 이 법에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 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 동 또는 조치를 하----- ----- <u>기관의</u> ----- ----- -----. ⑦ ----- ----- ----- ----- . 다만, 국내에서 판 매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 로 전파차단장치를 제조하는

현행	개정안
⑥ (생략)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하여는 인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삭제>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 제7항에 따른 인가와 인가의 면제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토사항

- 첫째, 전파차단장치 사용범위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9조제3항에⁴⁾ 따르면 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② 안전 활동, 군사활동, 대테러활동, 위반행위의 제지, 물리적방호 등

4)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③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즉 현행법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가능함.

- 개정안 제29조제4항은 이 중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를 위한 교육, 훈련, 장비정비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자는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이는 국가기관 등이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불법드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차단장치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둘째, 현행법 제29조제4항에⁵⁾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기관 중 국회·대법원 등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

5)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은 신고의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 제29조제6항은 전파차단장치의 도입·폐기 신고의 무기관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 셋째, 현행법 제29조제5항에⁶⁾ 따르면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또한 내수용과 동일한 인가의 대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파차단장치는 방위산업물자로서 수출 시 「방위사업법」 제57조에⁷⁾ 따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고 있으므로 테러단체 등에 판매되어 오·남용될 가능성은 없으며, 향후 「전파법 시행령」에 기업이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규정할 예정임.
- 이에 개정안 제29조제7항은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 인가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6)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를 인가한 사례는 1건(2024. 4.)에 불과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기업의 수요를 감안할 때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차단장치 사용범위 확대 및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인가 면제 등과 관련하여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교육·훈련·장비정비·시험 추가)하여 드론 공격 등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전파차단장치 관련 불필요한 규제 제거 및 내실있는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수용하는 입장임.
- 또한,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장비정비·시험 목적 사용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여 장치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전파차단장치는 방위사업물자로서 수출 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수출용 장치를 인가대상에서 제외해도 테러단체 등에 수출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가능한 활동 중 일부 활동(군사·대테러)에 대해서만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413호,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임종득의원안과의 비교표

현행	임종득의원안(2203413)	최형두의원안(2205494)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u>군사활동</u>	2. ----- ----- ----- ----- <u>군사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u>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u>대테러활동</u>	3. ----- ----- ----- <u>대테러활동 및 이와</u>	

현행	임종득의원안(2203413)	최형두의원안(2205494)
4. ~ 6. (생략) ④ ~ ⑦ (생략)	<u>관련된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활동</u> 4. ~ 6.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를 위한 교육, 훈련, 장비정비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자는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계획이 이 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의처

02)6788-5228